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외벽 개선공사 추진계획

'24.4.11.(목) / 미술품수장센터관리팀

□ 추진배경

- 외벽 문제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
 - 50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외벽 파라펫 균열부위로 동결융해 체적팽창으로 공극이 발생하여 외벽 미장면과 벽돌 일부가 탈락('22.12.6.(화), 14시경)
 - 외벽 고드름 낙하로 인한 외벽 대형현수막 작품 하단부 2회 파손(12.26, 1.31.)
- 외벽 노후화로 인한 수장시설 누수 발생으로 수장된 미술품 피해 우려
- 우리 센터 외벽에 서식하는 유해조류(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구조물의 성능 저하 및 철근 부식 가속화, 미관 저해

□ 공사내용

- 붕괴, 낙하 위험이 없는 외장재 설치(설치범위, 자재 및 공법 등 내부검토 후 진행)
- 내진댐퍼 방청·도장, 스테인레스 선홈통 개선
- 고드름 피해예방, 건물 내 빗물 유입차단을 위한 출입문 주변 차양 설치

□ 추진일정

- 2024년 4월 ~ 8월 : 설계용역 착수 및 완수(5월 대형현수막 철거 예정)
 - * 청주시 인허가, 심의 예정
- 2024년 8월 : 공사, 감리용역 계약 추진
- 2024년 9월 ~ 11월 : 외벽 개선공사 착공 및 준공

붙임 1

추진배경 관련 사진



외벽 미장면과 벽돌 일부 탈락으로 외벽 상태



외벽 낙하물 사진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시설물의 훼손 및 미관



고드름 피해로 작품 하단부 파손



청주관 우측면(서측)-하역장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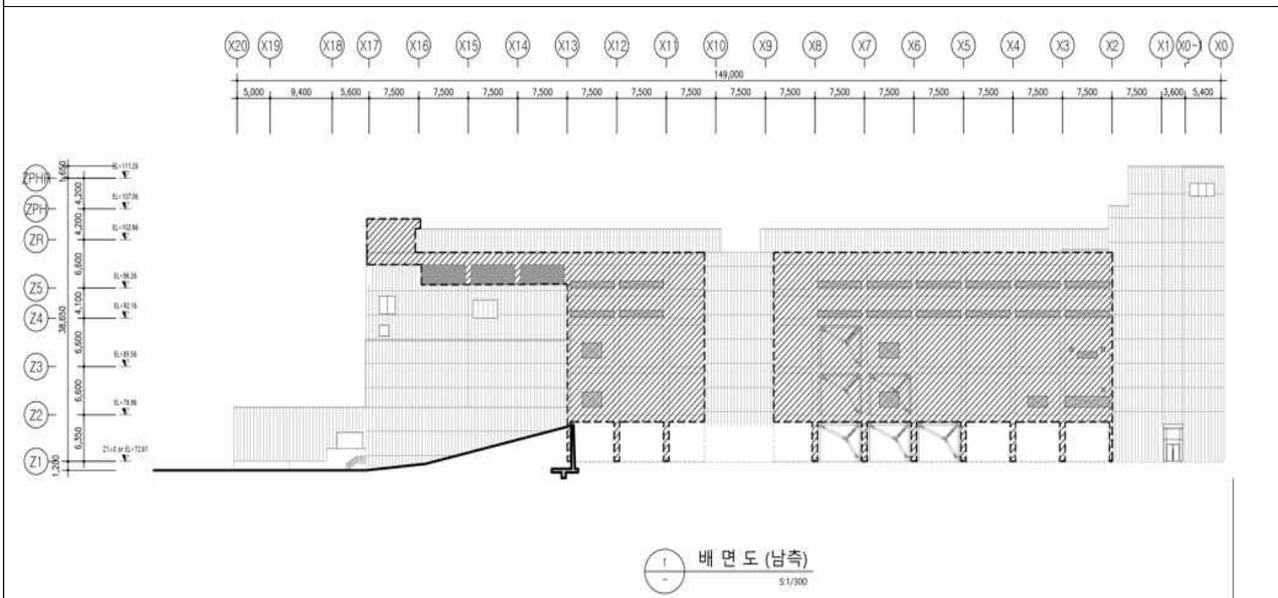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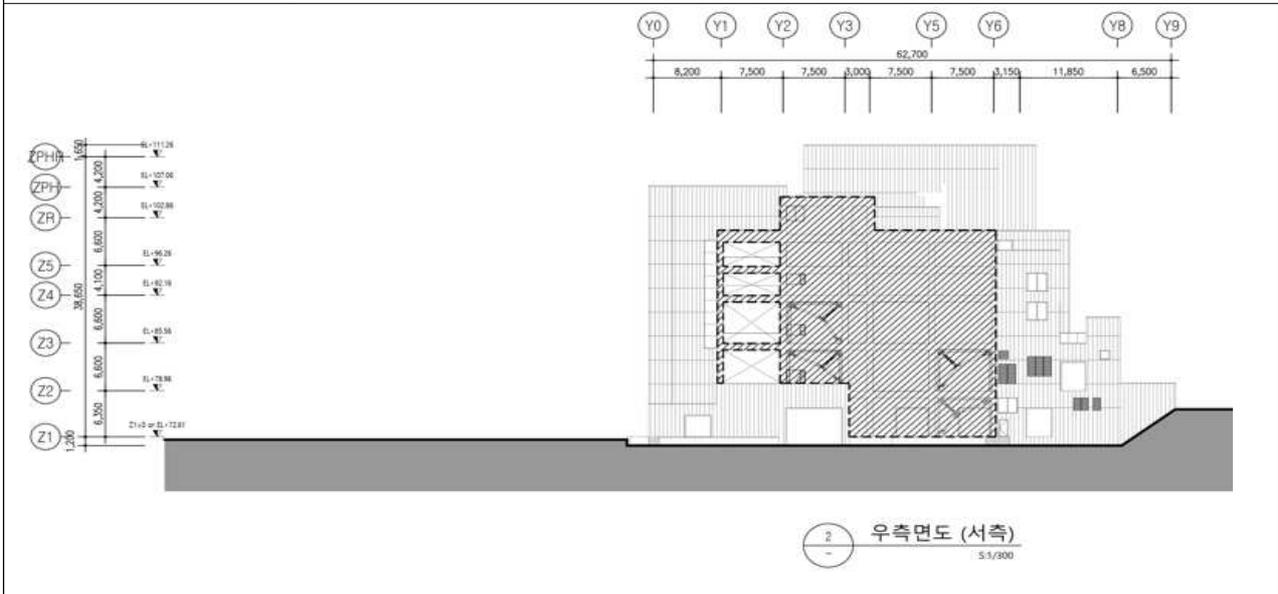
청주관 후면(남측)



청주관 정면(현재 상태)-5월 현수막 철거예정



청주관 외벽 상태





패널1(징크패널)



아시아문화의 전당 패널2(타공패널)



패널3(폴리카보네이트)



패널4(테라코타패널)



외벽패널 설치과정(참고용)

그 외 설계사에서 제시한
기타 자재와 공법 검토 적용



캐노피 관련 디자인(3개안)

항 목	법 규	법적기준	설계내용
대수선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
건축물 경관 심의	청주시 경관조례 제22조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가장 불리한 기준을 따른다. 1.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나. 시가지경관지구 , 원도심경관지구: 지상 4층 이하의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다. 지상 5층 이상 건축물: 우암산(다만, 고도지구는 3층 이상 건축물에 한한다) , 직지대로(다만, 녹지지역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허가대상으로서 2층 이상 건축물에 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건축물. 다만, 건물의 입면계획 중 변경하려는 부분이 심의를 받은 건축물 입면면적(정면, 배면, 측면 및 옥상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의 10분의 1을 넘지 않고 주요 구조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시가지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련 경관심의 대상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건축법 제4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심의신청 (30일 전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특례	건축법 제29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건축허가) , 제14조(건축신고), 제19조(용도변경), 제20조(가설건축물) 및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전 협의 (설계 중간)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건축법 시행령 제22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으로 한정한다)	공사 착공전 서류 제출